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사무국

국립환경과학원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동법 제46조 및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환경부로 위임받은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목표관리지침 제4조와 검증지침 제4조에 따라 2011년부터 지정기관 사무국을 설치하고, 관련 법규, 지침 및 ISO/IEC 17011 등 국제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공평성, 객관성 및 투명성과 비차별성을 보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온실가스 검증기관에 대한 지정의 승인, 유지, 확대, 축소, 정지 및 취소를 포함한 지정 결정에 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지정기관을 대표하여 지정업무를 총괄하며,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사무국장으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기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하고, 지구환경연구과장품질책임자로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업무의 실무를 총괄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지정기관 조직은 과학원장, 운영위원회, 지정심사자문단, 이의불만처리위원회, 사무국 및 기술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APAC 가입 및 2018년 IAF 가입을 완료하였고,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향후 국내 배출권의 국제적인 등가성 확보 및 국제탄소시장 연계를 위하여 국제상호인정협정(MRA/MLA) 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검증기관 지정사무국 운영 체계도]

